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

임종호*

한라대학교 복지행정학부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뇌성마비인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규명해 내고, 뇌성마비인의 임금수준의 증대를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차별, 단순노무직 여부, 직장규모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뇌성마비인의 임금수준의 증대를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뇌성마비인의 노동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회모델에 관련된 이론들인 장애의 사회모델과 노동시장이론이 개인모델에 관련된 이론인 개인의 인적자본이론보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기에, 지금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의 열악함을 설명하려고 했던 많은 연구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 뇌성마비인, 임금 결정요인, 개인모델, 사회모델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고용된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을 연구주체로 설정한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장애인복지 체제에서 중증장애인¹⁾인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 교신저자(culjh0510@naver.com)

- 1) 장애인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호)를 말하는데, 이를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를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가운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뇌병변장애인은 제3급 장애까지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첫째,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 전체에 비해 저임금수준²⁾이 빈곤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처방안의 모색이 정책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계준·조상현(1998)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된 이후 1998년까지 1,860명의 뇌성마비인이 구직을 신청하였는데 취업자의 평균임금은 56.6만원으로서 이토록 낮은 임금수준은 뇌성마비인 가구가 열악한 빈곤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둘째, 뇌성마비인 가구가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인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극히 적으며, 임금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뇌성마비인의 고용과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은 뇌성마비인 개인의 복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결과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³⁾의 고용형태를 다른 유형의 장애인 고용형태와 비교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15.5%가 임금근로자인데 비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7.2%의 취업자 가운데 불과 2.1%만이 임금근로자이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 가운데 가장 낮은 고용율을 나타내는 부분은 임시직을 포함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이다. 이선우 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지체·뇌병변장애인 가구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월 생활비는 11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월 소득은 106만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가구의 주요 소득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85.4%에 이르고 있어, 지체·뇌병변장애인 가구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전적으로 장애인 본인 및 가족의 근로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상과 같이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최근 중증장애인에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8만 2천원이며, 이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년 2/4분기)의 46.4%에 불과하다. 또한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가 52.5%이다. 이계준·조상현(1998)의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56.6만원으로 나타났다.

3) 2000년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에서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면서 장애인 분류체계도 변화시켰다. 그 중에서 뇌병변장애는 2000년 이전에는 지체장애인으로 분류되었던 뇌성마비인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많이 발생하는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 TBI)과 주로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중풍 : Stroke)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뇌병변장애에 전체에 대한 연구는 어렵적부터 장애를 지닌 뇌성마비인과는 달리 중도장애를 입은 외상성 뇌손상인과 경제활동인구의 범주를 넘어 주로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뇌성마비인의 고용과 취업 뇌성마비인의 임금을 연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뇌성마비인이지만 뇌성마비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통계의 부족으로 향후 제시되는 통계 수치는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대한 관심 고조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저임금수준이 뇌성마비인 빈곤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과 뇌성마비인 가구가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인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살펴볼 때,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뇌성마비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의 직업교육과 전환교육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뇌성마비인의 고용에 관한 현실적, 정책적, 개인의 복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인의 임금 결정 요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며, 단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임금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장애인 노동시장 구조분석(강동욱, 2002), 근로복지 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이정호, 2002), 장애인 고용과 월 임금 결정 요인(권유경, 1998),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이계준·조상현, 1998), 뇌병변 장애인의 직업영역에 관한 연구(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04) 등의 연구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노동시장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저임금 문제들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임금과 같은 노동시장의 결과를 분석하여 수요와 공급 측면, 차별 측면 등을 이해하는 데 초석을 다지고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임금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뇌성마비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9년까지는 뇌성마비 장애유형이 지체장애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15종류의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는 지체장애인과 가장 낮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는 뇌성마비장애가 포함된 뇌병변장애인을 지체장애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뇌성마비인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연구로 일반화하여 보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 2000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뇌성마비 장애를 종전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 뇌병변장애로 규정한 것도 지체장애와 뇌성마비장애의 장애 원인, 수반 장애, 장애 정도 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사지와 몸통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지체장애인과 뇌의 손상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어 신체마비, 언어장애, 침 흘림, 간질, 사시, 정신지체 등의 수반 장애를 가져오는 뇌성마비인을 하나의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그 기능제한 정도의 변량을 감안하지 않은 연구이므로 해석상의 많은 오류를 낳는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직업과 관련한 연구(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04)에서는 뇌병변장애인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기 어려운 뇌졸중(腦卒中 : 중풍) 장애인이 70.7%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순수한 뇌성마비인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연구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뇌성마비인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고용된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선행연구 가운데 권유경(1998)은 장애인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관점(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과 구조적 특성 관점(노동시장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정호(2002)는 근로복귀 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 요인 관점(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과 경쟁외적요인 관점(노동시장요인)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의 임금결정요인을 주로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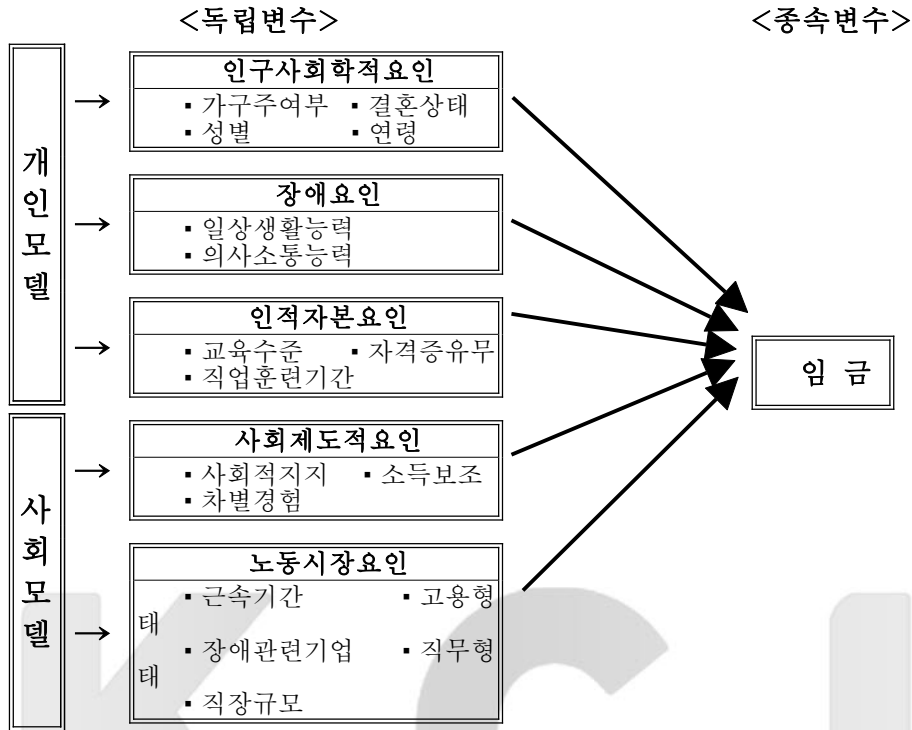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자는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 요인들을 분류함에 있어, 먼저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이론적 모델은 개인의 내적능력을 강조하는 개인모델과 내적능력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제도와 노동시장 등의 환경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에 따라 사회모델로 나누고자 한다. 이는 Oliver(1996), 오혜경(1999), 이성규(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개인모델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인적자본수준의 향상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그들의 임금수준이 향상되는 인적자본이론과 한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능력에 관한 의사소통이론을 포함한다. 사회모델은 개인의 고용기회나 임금 등의 보상 수준이 개인의 내적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제도와 노동시장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관점으로 사회제도이론과 노동시장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고용된 뇌성마비인의 임금수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내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뇌성마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지체부자유 학교의 전환교육이나 직업교육 분야의 단초를 제공할 것임과 아울러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증대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II.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요인이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뇌성마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요인을 살펴보고 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하고자 임금에 미치는 연구 모형 <그림1>을 설정하였다.



<그림1> 임금에 미치는 연구 모형

2. 연구가설

첫째, 인구사회학적요인의 관련 변수 가운데, 가구주인 경우 해당 가구의 주 소득원으로서 가구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구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희망임금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상태 역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책임부여로 인해 취업에 대한 적극성에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차이가 있어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별에 있어서도 이종노동시장론에서 주로 강조하듯이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수봉(1995)의 연구에서는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고용을 제외받을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희망임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은 임금수준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연공서열형의 임금구조 하에서는 연령의 한 단위 증가가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장애요인 변수는 일상생활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변수를 투입하여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고용된 뇌성마비인에 대한 직무배치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을 충분히 수행하는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의사소통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무리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이나 생산직보다는 임금수준이 향상된 사무직이나 전문직으로의 배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변수를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인적자본요인이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가설화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교육연수, 직업훈련여부, 자격증소지여부의 인적자본변수는 뇌성마비인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고용에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인적자본요인들이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의 비시장적 기제의 힘이 크지 않다면, 장애인의 인적자본요인은 장애인의 임금에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연수, 직업훈련기간, 자격증소지 여부를 고용된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요인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뇌성마비인의 인적자본수준의 차이는 노동시장에 기존에 존재하던 보상체계에 의해서 보상의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격증을 소지할수록, 직업훈련기간이 길수록 뇌성마비인의 임금수준은 향상될 것이다.

넷째, 사회제도적요인이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가설화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지지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고용주나 동료의 지지가 직업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업자 집단은 친구와 가족의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경우에 직장 이직의도가 적어 직업재활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임금수준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조는 보충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공부조의 급여액도 임금수준을 떨어뜨리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성마비인은 고용현장에서 노동권(노동환경, 임금, 산재보상)에 대한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노동을 통한 자아성취와 경제력을 확보하는 삶의 주요 영역에서 상당히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소득보조, 차별경험을 고용된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적요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노동시장요인이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가설화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하에서는 근속연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모두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지위별 평균임금의 분포는 임시직은 상용직의 54%, 일용직은 상용직의 41%에 해당하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간의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관련 기업여부는 장애인에 대하여 수요 독점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임

금에 대한 장애인관련 기업여부는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생산직에 비해 임금이 11% 높고, 서비스·판매직의 계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간의 임금의 차이는 독점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생산직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서비스·판매직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독점이윤의 실현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간에도 이윤크기의 실현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장규모를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미치는 요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속연수, 고용형태, 장애인관련기업 여부, 직무형태, 직장규모를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요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추론과 논의에 근거하여 고용된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1>부터 <연구가설 4>까지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장애요인 가운데 일상생활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인적자본요인 가운데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자격증을 소지할수록, 직업훈련기간이 길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사회제도적요인 가운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소득보조가 적을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4>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노동시장요인 가운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상용직일수록, 장애인관련기업이 아닐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닐 경우, 직장규모가 클수록 임금 수준은 높을 것이다.

III.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조사 방식에 의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베이 설계를 통한 다수의 뇌성마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표집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뇌성마비인 근로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표본추출은 개별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을 기본단위로 이루어졌다. 이에 일차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의 뇌병변복지관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취업 근로자, 한국뇌성마비연합회 및 기타 관련 단체 회원으로서 취업 근로자, 뇌성마비학생들이 재학했던 지체부자유특수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취업 근로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장애인 친화적인 기업을 선정하였다. 뇌성마비인에 대한 접근성⁴⁾과 대상자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주로 4개 기관에 소속된 139명의 뇌성마비인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표집대상이 속해있는 집단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의표집방법(purposive of judgemental sampling)인 비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표집대상을 접촉이 용이한 각 기관별 이용자나 회원을 조사대상자로 추출했다는 점에서는 임의표집방법(accidental or convenient sampling)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채구목, 2001). 이후 선정된 기관에 조사원 파견 또는 설문지 발송의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선정된 뇌성마비인에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기관간 사례 중복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전에 동일한 설문조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임금

고용된 뇌성마비인 근로자들의 월 임금수준을 사용하며 만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파악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요인

① 가구주여부 : 가구주인 경우는 1,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0을 부여하였다.

② 결혼상태 : 결혼 상태는 미혼인 경우는 1을 부여하고, 결혼 후 배우자와 살고 있는 상태와 이혼, 별거, 사별은 0을 부여하였다.

③ 연령 : 연령을 연속변수인 만 나이를 그대로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4) 뇌성마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개별 장애인을 표집 단위로 하기에는 접근의 어려움이 많아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을 단위로 이루어진다(전영자, 2002; 고유진, 1996). 그러나 이 경우 장애정도가 중중인 대상자 위주로 표집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지체장애인들이 표집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를 포함시켰으며, 두 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표집대상의 연령층이 너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구직활동 중에 있거나 취업 중에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였다.

④ 성 : 성은 더미변수로서 남성일 경우는 1, 여성일 경우는 0을 부여하였다.

3) 장애요인

① 일상생활능력 : 일상생활능력 정도는 ADL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Modified Barthel Index⁵⁾로 측정된 연속 변수값이다. Modified Barthel Index를 통해 측정된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동작을 더 잘 수행한다는 것이다.

② 의사소통능력 : 의사소통능력이란, 직업인으로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뇌성마비인이 보여줄 행동에 대해서 문제이해, 자기주장, 변화적응, 의견제시, 자신의 입장포기 등 8항목에 걸쳐 서술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준웅(1991)의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전략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신뢰도가 .70을 상회하고 있으며 응답범주는 자신의 의사소통정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

4) 인적자본요인

① 교육수준 : 교육 받은 연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② 자격증 유무 : 자격증은 정부 등 공식기관이나 취업현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를 의미하며, 국가공인자격과 민간자격을 포함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하였다.

③ 직업훈련이수 기간 : 직업훈련 받은 개월 수를 사용하였다.

5) 사회제도적요인

① 사회적지지 :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만 뇌성마비인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로 측정한다. 이를 위해 Zimet 외(1994)가 개발한 다면적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 MSPSS)를 최희수(1999)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친구,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지

5) Modified Barthel Index는 Mahony & Bathel(1965)이 개발한 Barthel Index 척도를 세분하여 Granger(1979)가 가중치를 감안하여 수정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동작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상지기능에 관한 동작 9개의 항목과 하지기능에 관한 동작 6개 항목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점수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점수가 100점이 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동작 능력이 좋다고 평가된다. 장애인복지론(2004), 박옥희, 학문사.

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10개 항목으로 재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10점’까지로 10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의 총합점수로 사회적 지지점수를 계산하였다. Zimet 외(199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91이었고 (Corcoran & Fischer, 1994), 최희수(199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2를 보였다.

② 소득보조 : 소득보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뇌성마비인을 대상으로 소득의 결핍을 직접적으로 보충시켜 주거나 금전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득보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여부와 장애수당, 생계급여, 자활급여, 기타 수당을 파악하며 월 소득보조 금액을 만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파악하였다.

③ 차별경험 : 노동시장의 차별경험이란 미국장애인법(ADA)의 규정에서 제시한 ‘장애인이 직업을 구할 때나 취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적용시켜 노동기회나 고용을 제한하거나 구분 또는 분류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이 있거나 업무 협력의사가 있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업무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인이 위와 같은 경험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경험은 박옥순(2002)의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근거한 「장애인 인권지표 체계」 가운데 노동권의 항목을 참고로 연구자가 수정하였으며, 모집, 사회적 편견, 경제사정, 산업구조변화, 고용자 이해, 노동생산성, 공동작업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차별경험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역점수로 계산하였다. 예비조사(pilot-test) 결과 신뢰도는 .909를 보였다.

6) 노동시장요인

① 근속기간 : 현재 직업에 종사한 총 연수를 연속변수로 하여 투입하였다.

② 고용형태 :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주로 상용직과 비상용직의 2분 범주를 선택했다. 상용근로자일 경우 1, 비상용근로자일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③ 장애인관련기업 : 장애인 관련기업 여부는 고용된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전용 기업이나 관련단체이면 1, 아니면 0을 부여하였다.

④ 직무형태 : 취업자의 경우 직무변수는 한국표준 직무분류표의 9가지 분류를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인의 직무형태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단순노무직 근로자일 경우 1, 아니면 0을 부여하였다.

⑤ 직장규모 : 직장규모변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를 연속변수로 하여 투입하였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타당화 과정(measure validation process)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개념적으로 묶여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타당도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독립 변수는 사회적지지, 차별, 의사소통이다. 일상생활능력은 표준화된 척도이며 신뢰도는 .96이므로 별도의 신뢰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다른 척도들의 결과는 다음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척도	관련문항	문항수	α
일상생활능력	1	15	.960
의사소통	2	8	.821
사회적지지	3	10	.724
차별경험	6	7	.921

본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구로 개발된 것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연구대상인 뇌성마비인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1단계에서는 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측정항목들이 가능한 논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척도를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척도를 뇌성마비단체 소속 회원 4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항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논리적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법(jury opinion)을 활용한다(오혜경, 1998). 이를 위해 최종 수정작업 및 조사에 사용될 척도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장애인복지관 실무책임자 2명과 뇌성마비인이면서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생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실무책임자 2명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사전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척도의 문항들이 이론적 배경과 일치하는지, 가설검증에 적합한지, 설문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뇌성마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4.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총 5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독립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요인 등 5개의 영역으로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임금에 대해 1문항의 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중에서 인구사회학적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4문항, 장애요인 24문항, 인적자본요인 3문항, 사회제도적요인 19문항, 노동시장요인 5문항을 질문하였다.

<표 2> 설문지의 문항 구성표

분류	요인	변인	설문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종속변수		임금	월 임금 수준	1	17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요인	가구주 여부	가구주 여부	1	11
		결혼상태	미혼, 배우자와 살고 있는 여부	1	14
		연령	만 연령	1	13
		성	남, 여	1	12
	장애요인	일상생활능력	컵 사용, 식사, 상하의 입기, 보조기 사용, 목치장, 세수, 대소변, 의자 사용, 화장실사용, 욕조 들어가기, 평지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장애유형, 중복장애	15	1
		의사소통능력	문제이해, 자기주장, 상황대처, 관심기울이기, 의견제시, 주변인지, 의견조정능력, 자신의 입장표기	8	2
		교육수준	교육받은 연수	1	15
	인적자본요인	자격증 유무	자격증 소지여부	1	9
		직업훈련기간	직업훈련 기간	1	8
		사회적지지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	10	3
	사회제도적요인	소득보조	수급자 여부, 소득보조 종류 및 금액	2	4-5
		차별경험	모집, 사회적편견, 경제사정, 산업구조변화, 고용자 이해, 노동생산성, 공동작업	7	6
노동시장요인	근속연수	현 직장 근속 연수	1	18	
	고용형태	상용근로자(전일제), 상용근로자(시간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	19	
	장애관련기업	장애인 관련기업이나 단체 유무	1	20	
	직무형태	고위관리직·전문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생산직, 농어업직, 단순노무직	1	21	
	직장규모	직원 수	1	22	
			총계	56	1-22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요인 등 주요 변수들에 따른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가설 1>부터 <연구가설 4>까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각 요인과 임금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위해 사용할 통계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11.0을 활용하였다.

<표 3> 임금 분석방법

연번	독립 변수 명	측정 수준	설 명	종속 변수	통계 기법
1	가구주 여부	이항	가구주 1, 가구원 0	월 임금 수준 (연속)	multiple regression
2	결혼 상태	이항	미혼 1 기혼, 이혼·별거·사별 0		
3	연령	연속	생년월일을 환산		
4	성별	이항	남성 1, 여성 0		
5	일상생활능력	연속	Barthel Index로 측정한 값		
6	의사소통능력	서열	의사소통능력(1-10 척도)		
7	교육 수준	연속	교육 받은 연수		
8	자격증소지 여부	이항	소지 1, 미소지 0		
9	직업훈련기간	연속	직업훈련 받은 기간		
10	사회적지지	연속	가족, 친구, 상사 등의 지지정도 (1-10 척도)		
11	소득보조	연속	월 소득보조금액		
12	차별경험	서열	취업과 관련하여 차별받은 경험(1-10 척도)		
13	근속 연수	연속	취업 기간		
14	고용 형태	이항	상용근로자 1 비상용근로자 0		
15	장애관련기업여부	이항	장애인전용 기업이나 관련단체면 1, 아니면 0		
16	직무(경제활동분야)	이항	단순노무직 1 기타(단순노무직 이외) 0		
17	직장규모	연속	직원 수		

IV. 분석 결과

1. 임금 수준 및 임금 관련 요인

종속변수인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일반적인 임금변수의 분포는 좌편향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임금 변수는 이러한 일반적인 임금 함수의 형태와 달리 정규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139명에 대한 임금수준을 보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의 분포로 표준편차 40.81을 나타내고 있으며, 월 평균 70만 5천원 정도의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다. 월 임금 수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26.6%,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은 59.7%, 100만원 이상은 13.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2003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165만원과 비교하였을 때 42.7%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뇌성마비인 임금 소득자의 월 임금수준이 하향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임금 분포							
		빈도 (명)	계	비율 (%)	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임금	139	139	100	100	70.50	40.81	10	400

임금과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고용된 뇌성마비인 전체 대상은 139명이며,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상용고용(전일제)’ 114명(82.0%), ‘기타(시간제 상용고용·임시고용·일일고용)’ 25명(7.4%)이었으며, 상용고용이 많은 것은 취업자의 대부분이 장애인 관련단체나 직장에 취업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지원금 수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애관련 직장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와 관련 있음’ 125명(89.9%), ‘장애와 관련 없음’ 14명(10.1%)으로 나타난 결과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장애와 관련된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집대상이 장애인 친화적인 사업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 관련 단체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무형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단순노무직’ 50명(36.0%), ‘사무직’ 42명(30.2%), ‘전문가’ 27명(19.4%), ‘기타’ 20명(14.4%)으로 나타나서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문가’의 비율이 27명(19.4%)로 나타난 것은 뇌병변복지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대상자들이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종사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252개월로 분포되었으며 평균 55.80개월(4년 6개월) 정도 취업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된 직장의 평균직원 숫자는 20.35명이며 최소 직원 3인에서 최대 140인으로 나타나 직장규모별 분포에서도 뇌성마비인은 근로환경이나 보상수준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이 종전 300인 이상 업체에서 2% 이상 고용에서, 2005년부터 200인 이상 업체에서 2%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확대 변경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인을 고용한 업체의 직원 숫자가 최대 140명에 불과하므로 의무고용과 관련한 연구는 살펴보기 어렵다. 단지 업체의 규모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정도만 살펴볼 수 있다.

<표 5> 임금 관련 요인

구	분	빈도(명)	계	비율(%)	계
고용형태	상용고용(전일제)	114	139	82.0	100
	상용고용(시간제)	9		6.5	
	임시고용	13		9.4	
	일일고용	3		2.2	
장애관련 직장여부	관 련	125	139	89.9	100
	비 관 련	14		10.1	
상용고용 여 부	상용고용(전일제)	114	139	82.0	100
	기타 고용형태	25		18.0	
직무형태	전문가	27	139	19.4	100
	사무직	42		30.2	
	단순노무직	50		36.0	
	기 타	20		14.4	

구	분	사례수	평균	중위수	최빈수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값
직업종사기간(월)		139	55.80	24.00	0	42.82	1	252
직장규모		139	20.35	14.00	30	17.07	3	140

2. 임금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과 전반적인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확인하였으며, 상관계수를 통한 관계의 정도와 방향은 <표 6>과 같다.

종속변수인 임금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연령($r=.318, p<.01$), 교육수준($r=.226, p<.01$), 소득보조($r=-.173, p<.05$) 순으로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때 일반적 특성 중 불

연속변수는 상관관계분석의 기본 가정에 위배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순상관관계를 보면 인구나사회학적요인에서는 연령이, 인적자본요인에서는 교육수준이, 노동시장요인에서는 소득보조 변수들이 임금과 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연령 변수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관련된 특성들을 더 많이 습득하고 숙련도가 향상된다는 해석이 뇌성마비인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50세 이상이 되면 장애의 영향과 노화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상실과 고령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기피 현상으로 저임금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짙은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뇌성마비인 가운데 가장 높은 연령은 47세이므로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과 소득보조의 경우 뇌성마비인의 임금수준은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보조의 경우 뇌성마비인의 직업훈련기관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변수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임금과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pearson's r)

	임금	연령	일상생활 동작	의사소통	교육수준	직업훈련기간	사회적 지지	소득보조	차별	직업종사기간	직장규모
임금	1										
연령	.318***	1									
일상생활동작	.120	-.119*	1								
의사소통	.129	.038	.012	1							
교육수준	.226**	-.305***	.319***	.170**	1						
직업훈련기간	-.106	-.051	-.043	-.023	-.015	1					
사회적 지지	.047	.046	.082	.434***	.174**	.000	1				
소득보조	-.173*	.248***	-.237***	-.015	-.235***	.085	-.088	1			
차별	-.066	.069	-.236***	.179***	.091	.012	.199***	.107*	1		
직업종사기간	.095	.081	.157**	-.002	.057	-.049	.026	-.089	-.125*	1	
직장규모	.109	.128	.319***	-.039	-.150	.068	-.011	-.005	-.217*	.037	1

*p<.05, **p<.01, ***p<.001

3. 임금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

본 연구의 두 관점인 개인모델인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과 사회모델인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요인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회귀분석⁶⁾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설정된 <연구가설 1>부터 <연구가설 4>까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요인이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표는 <표 7>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미치는 요인」에 나타나 있다.

(임금모형)

$$Y = b_0 + b_1P_1 + b_2P_2 + b_3P_3 + b_4P_4 + b_5D_1 + b_6D_2 + b_7C_1 + b_8C_2 + b_9C_3 + b_{10}S_1 + b_{11}S_2 + b_{12}S_3 + b_{13}L_1 + b_{14}L_2 + b_{15}L_3 + b_{16}L_4 + b_{17}L_5$$

Y: 임금

P₁: 가구주여부, P₂: 결혼상태, P₃: 연령, P₄: 성별, D₁: 일상생활동작,

D₂: 의사소통, C₁: 교육수준, C₂: 자격증유무, C₃: 직업훈련기간,

S₁: 사회적 지지, S₂: 소득보조, S₃: 차별, L₁: 직업종사기간,

L₂: 전일제여부, L₃: 장애직장여부, L₄: 단순노무직여부, L₅: 직장규모

인구사회학적요인에서는 결혼상태(β=-.312, p<.001)는 기혼인 경우, 연령(β=.169, p<.05)은 정적인(+) 방향으로 임금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요인인 교육수준(β=.230, p<.01)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소지 여부, 직업훈련기간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회제도적요인 가운데 차별(β

6) 회귀분석을 위한 회귀진단 과정을 통해 다중공선성, 자기상관 등을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존재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일반적으로 0.1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분산팽창계수는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값이 1.76으로 자기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Durbin-Watson 계수는 2에 가까우면 자기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다(최태성·김성호, 2001).

=-.311, $p<.001$) 변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와 소득보조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노동시장요인 가운데 단순노무직 여부($\beta = -.448, p<.001$)와 직장규모($\beta=.269, p<.01$)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로 나타낸 것은 <표 7>과 같으며, 이를 구체적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미치는 요인

		B	표준 오차	Beta	t	Tolerance	VIF
인구사회 학적요인	가구주 여부	6.138	6.476	.075	.948	.676	1.479
	결혼상태	-34.100	8.464	-.312	-4.029 ***	.701	1.426
	연령	1.230	.617	.169	1.992 *	.694	1.442
	성별	2.494	6.317	.028	.395	.611	1.637
장애요인	일상생활동작	.094	.134	.061	.704	.846	1.182
	의사소통	.406	.294	.111	1.381	.530	1.886
인적자본 요인	교육수준	1.731	.588	.230	2.945 **	.586	1.706
	자격증소지 여부	-1.780	7.097	-.021	-.251	.677	1.478
	직업훈련기간	-.281	.154	-.126	-1.825	.856	1.169
사회제도 요인	사회적지지	-.240	.183	-.114	-1.312	.553	1.807
	소득보조	-.383	.215	-.141	-1.778	.717	1.394
	차별경험	-.740	.205	-.311	-3.613 ***	.593	1.687
노동시장 요인	직업종사기간	.074	.082	.064	.902	.578	1.731
	상용직 여부	3.499	8.166	.033	.428	.683	1.465
	장애관련 직장	-6.438	10.075	-.048	-.639	.543	1.840
	단순노무직 여부	-37.947	8.604	-.448	-4.411 ***	.680	1.470
	직장규모	.642	.204	.269	3.153 **	.777	1.287
(상수)		63.057 *					
R ²		.468					
adj. R ²		.393					
F		6.262 ***					

* $p<.05$, ** $p<.01$, *** $p<.001$

주) 더미변수

가구주여부 : 가구주(1), 가구원(0), 결혼상태 : 미혼(1), 기타(0), 성별 : 남(1), 여(0), 자격증소지 여부 : 유(1), 무(0), 상용직여부 : 여(1), 부(0), 장애관련직장 여부 : 여(1), 부(0), 단순노무직 여부 : 여(1), 부(0)

위와 같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인구사회학적요인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결혼 상태와 연령 변수가 지지를 받았으며, 장애요인을 검증

하는 <연구가설 1>은 기각되었다. 인적자본요인을 검증하는 <연구가설 2>에서는 교육 수준 변수가, 사회제도적요인을 검증하는 <연구가설 3>에서는 차별경험 변수가, 노동시장요인을 검증하는 <연구가설 4>에서는 직무형태와 직장규모 변수가 고용된 뇌성마비인의 임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뇌성마비인의 임금결정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뇌성마비인을 둘러싼 사회모델이 개인모델보다는 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고용이나 임금에 관한 연구에서는 장애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구사회학적요인이나 장애요인 등과 같이 이미 결정된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제도나 노동시장 환경과 같은 제도나 환경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첫째, 뇌성마비인의 노동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회모델에 관련된 이론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생산성의 증가가 고용과 소득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장애요인이나 인적자본요인의 가정이 뇌성마비인에게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따라서 뇌성마비인의 노동시장에서는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등으로 구성된 개인모델에 관한 이론들 보다는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요인 등으로 구성된 사회모델에 관련된 장애의 사회제도이론과 노동시장이론 등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둘째, 연구대상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을 세분하여,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뇌성마비인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이전의 장애분류인 지체장애인과 함께 연구대상을 선정하였거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뇌병변장애인 가운데 70.7%에 달하는 뇌졸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순수한 뇌성마비인에 대한 연구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인이 자주 이용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뇌병변복지관, 뇌성마비 관련단체, 장애인 친화적인 사업체, 지체부자유특수학교 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139명의 뇌성마비인 근로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뇌성마비인의 임금수준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뇌성마비인과 관련된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을 좀 더 면밀히 파악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연구에서 노동공급측면이나 장애인의 개인모델에 치중하여 연구한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제도적요인과 노동수요측면을 설명하는 노동시장요인을 포함한 사회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함으로써 뇌성마비인의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고용된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노무직 여부, 결혼상태, 차별, 직장규모, 교육수준,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인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모델로서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을, 사회모델로서 사회제도적요인, 노동시장요인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들이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 결과, 고용된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노무직 여부, 결혼상태, 차별, 직장규모, 교육수준, 연령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밝힌 것은 장애인 고용 연구 분야의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뇌성마비인의 노동시장에서는 뇌성마비인 근로자가 지닌 개인의 능력보다는 뇌성마비인 주위를 둘러싼 제도와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과 임금의 열악함을 설명하려고 했던 많은 연구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2. 실천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 조사대상자인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뇌성마비인 근로자의 저임금 수준을 해결할 방안을 위한 장애인복지 실천현장 및 장애인복지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뇌성마비인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에 해당하는 장애의 사회모델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성에 의하거나 장애운동의 산물로 발전해 온 장애정책의 현실과 방향에 대해 재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복지시스템의 기본적 틀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개입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재 정책집행에서 반사적 이익을 받는 장애인이라는 위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국가적 개입전략의 방안 및 개입방법은 어떤 순위를 가지고 구현될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뇌성마비인의 저임금수준은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의 구조 때문인 경향이 강하므로 공공부문에 의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성마비인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뇌성마비인이 속해 있는 노동시장의 임금구조가 분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성마비인 노동자의 임금은 장애요인이나 인적자본요인 등의 장애인 개인이 지닌 능력보다는 뇌성마비인을 둘러싼 사회제도적요인이나 노동시장요인 등의 제도와 환경들에 의해 더 근본적인 영향을 받으며, 노동시장에는 보수가 높은 직종과 보수가 낮은 직종으로 분절되어 있어서, 빈곤선 이하의 저임금이 사라지지 않는 한 뇌성마비인의 빈곤층 이하의 직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별적 관행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에서 뇌성마비인들이 처한 사회환경을 바꾸는 방안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뇌성마비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른 더블카운트(double count)제도의 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차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법률들이 있으나 법 적용의 실효성과 구제기관의 설치, 입증책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고용차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차별변수는 뇌성마비인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예방하고 고용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칭 ‘장애차별금지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득보조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는 것과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안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여야 한다.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근로할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과 소득으로만 그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어 근로능력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수급권이 단순히 장애인의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소득보장뿐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근로활동 참여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직업재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복귀 촉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동욱(2002),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권유경(1998), 한국 장애인의 고용과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옥순(2002),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오혜경(1998), **조사방법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오혜경(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이계준·조상현(1998),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선우 외(2001), 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55, pp. 39-50.
- 이성규(2000),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 정치*, 나남출판.
- 이정호(2002), 근로복지 장애인의 월임금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준웅(1991),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전략간의 관계에 대한 공변량구조 모형 검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2004), 뇌병변 장애인의 직업영역에 관한연구.
- 채구묵(2001),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양서원.
- 최희수(1999),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재활 성과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Oliver, M.(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 From Theory to Practice* N.Y : Palgrave.
- Zimet, S., Farley, G. K., Zimet, G. D.(1994), Home Behaviors of Children in Three Treatment Settings: An Outpatient Clinic, a Day Hospital, and an Inpatient Hospita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1), pp. 56-60.

K C I

Factors on Determinants of Wage an Employee with Cerebral Palsy

Im, Jong-Ho

Hall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wage standards of employed persons with cerebral palsy, factors that affect their employability and wage standards are examined, and also aims to draw out the social welfare policies for improvement in their employment rate and wage standards.

The summary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Looking at the effect of each factor on wage, the wage was predictable from marital status, age bracket, education level, discrimination, simple labor, and scale of employer.

Suggestions for welfare practice and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policies for the welfare of disabled for solving wages of persons with cerebral pals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corresponding to the Social model surrounding the persons with cerebral palsy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have a great impact on salary; for this reason,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disability is great to some extent.

Key Words : Employee with Cerebral Palsy, Factors on Determinants of Wage, Individual model, Social model